덕은한강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http://www.deokeunhanriver.es.kr

제2023-97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55
☎ 02) 3158-8600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협력 요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비에 신록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청렴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찬조금이란?

교내 교육활동 관련 단체 또는 후원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한 후,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2.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 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조성 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 홍보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 목적	•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3.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사용하는 것은 부패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청렴한 교직원의 사기 저하, 교직원과 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공교육 공정성 의심

5. 불법찬조금 신고처

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감사관실)/불법찬조금 신고

나. 전화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상담 031) 820-0847

2023. 4. 21.

덕은한강초등학교장